

◎ 축산법 시행 규칙 개정

정부는 1986. 9.27 자로 무량가축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급하고 균친번식에 따른 가축자질의 불량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의 정액공급 및 인공수정등 일련의 과정에서의 혈통관리를 강화하고, 종축업자, 부화업자 또는 축산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. 임대하거나 시설변경을 하는 경우의 신고절차등을 마련하여,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하였음.

농수산부령 제 1호

축산법 시행 규칙 중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.

1986. 9.
농 수 산 부 장 관

- 축산법 시행 규칙 중 개정령 -

축산법 시행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○ 제 6 조의 2 의 제목 중 “등록” 을 “등록증” 으로 하고 동조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동조에 제 5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가축인공수정용 정액 (이하 “정액” 이라 한다) 을 채취, 처리하여 공급하거나 수입하여 공급하는 자 (이하 “정액공급자” 라 한다) 는 당해 정액을 제공한 종축의 혈통에 관하여 별지 제 23 호서식의 정액인공수정증명서에 의하여 종축 등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⑤ 종축등록기관은 영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와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신청한 정액공급자로부터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

○ 제 6 조의 3 제 3 항 중 “별지 제 1 호의 2 서식의 종축검정신청서를 ‘을’ 종돈의 경우에는 별지 제 1 호의 2 서식의 종돈검정신청서를, 종계의 경우에는 별지제 1 호의 3 서식의 종계검정신청서를 각각 ” 으로 한다.

○ 제 6 조의 3 제 4 항 중 “종축검정신청서” 를 “종돈검정신청서 또는 종계검정신청서” 로, “별지 제 1 호의 2 서식의 종축검정신청서를, ‘을’ 종돈의 경우에는 별지제 1 호의 2 서식의 종돈검정서

를 종계의 경우에는 별지제 1 호의 3 서식의 종계검정서를 각각 ” 으로 한다.

○ 제 6 조의 3 제 5 항 중 “종축검정서” 를 “종돈검정서 또는 종계검정서” 로 한다.

○ 제 12 조에 제 4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기타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가축의 개량, 증식 또는 사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○ 제 17 조 제 3 항 및 제 4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에 제 5 항 및 제 6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종축업의 등록을 한 자 (이하 “종축업자” 라 한다) 는 법 제 13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업의 양도 또는 임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양도 또는 임대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, 시설변경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변경의 공사개시 예정일 10 일 전까지 각각 별지제 9 호서식의 종축업등록변경신고서를 관할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도지사는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제 11 호서식의 종축업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개신. 교부하고, 종전의 종축업등록증은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.

⑤ 도지사는 종축업의 등록을 받거나 종축업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

⑥ 도지사는 법 제 14 조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축업등록의 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취소처분을 받은 자로부터 종축업등록을 지체없이 회수하여야 한다.

○ 제 18 조 3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에 제 4 항 및 제 5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부화업의 허가를 받은 자 (이하 “부화업자” 라 한다) 는 법 제 13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업의 양도 또는 임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양도 또는 임대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, 시설변경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변경의 공사개시 예정일 10 일 전까지 각각 별지제 12 호서식의 부화업허가증 신고서를 관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도지사는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제 13 호서식의 부화업허가증을 신고인에게 개신. 교부하고, 종전의 부화업허가증은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.

⑤ 도지사는 법 제 14 조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화업허가의 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취소처분을 받은 자로부터 부화업허가증을 지체없이 회수하여야 한다.

○ 제 20 조의 2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 조에 제 4 항 및 제 5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 13 조의 2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업의 양도(축산업의 허가인 경우에는 승인)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“신고등”이라 한다) 또는 임대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양도 또는 임대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0 일之内에 (승인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 일이전에), 시설변경의 신고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시설변경의 공사개시예정일 10 일전까지 별지제 9 호서식의 축산업등록변경신고서 또는 축산업허가변경승인신청서를 관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당해 시설변경이 건축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일 때에는 그 허가를 받기 전에 시설변경의 신고등을 하여야 한다.

④ 도지사는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등을 받은 때에는 별지제 11 호서식의 축산업등록증 또는 축산업허가증을 개신, 교부하고 종전의 등록증 또는 허가증은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.

⑤ 도지사는 법 제 14 조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의 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취소처분을 받은 자로부터 축산업등록증 또는 축산업허가증을 지체없이 회수하여야 한다.

○ 제 26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26 조(정액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등)
① 법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공급자 또는 수정사가 발급하는 정액증명서 또는 가축인공수정증명서는 별지제 23 호서식의 정액·인공수정증명서에 의한다.

② 정액공급자는 별지제 24 호서식의 정액공급대장을 비치하고, 정액의 공급내용을 3년간 기록·보존하여야 한다.

③ 수정소의 등록을 한 자는 별지제 25 호 서식의 정액수불대장 및 별지제 25 호의 2 서식의 가축인공수정대장을 비치하고 수정 및 정액수불 내용을 3년간 기록·보존하여야 한다.

○ 제 60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 60 조(수수료) 법 제 70 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납부대상자 및 금액은 별표 7과 같다.

[별표 1] 종축업등록기준중 1. 종돈업란에 라목을, 동기준중 2. 종계업란에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종돈사육시설은 종돈사육시설외의 돈사와 구분하여 설치할 것.

마. 종계장은 가축위생시험소의 주백리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곳일 것.

[별지제 1호의 2서식]·[별지제 9호서식]·[별지제 11호서식]·[별지제 12호서식]·[별지제 13호서식]·[제 16호서식]·[제 17호서식]·[제 19호서식]·[제 23호서식]·[제 24호서식] 및 [제 25호서식]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, [별지제 1호의 3서식] 및 [별지제 25호의 2서식]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198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정액·인공수정증명서에 관한 적용례) 제 6 조의 2 제 4 항 및 제 26 조제 1 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액·인공수정증명서의 서식은 정액공급자가 공급하는 정액증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③(종축업자·부화업자 또는 축산업자의 신고등에 관한 적용례) 종축업자·부화업자 또는 축산업자의 영업의 양도·임대 또는 시설변경의 신고·승인에 관한 제 17 조제 3항, 제 18 조제 3항 또는 제 20 조의 2 제 3 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후 각각 최초로 영업양도·임대 또는 시설변경을 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.

④(정액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시행전에 제 26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종전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정액증명서 또는 가축인공수정서는 이를 제 26 조제 1 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액·인공수정증명서로 본다.

⑤(종돈업 또는 종계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치) 이 규칙시행전에 종돈업 또는 종계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1 중 제 1 호 라목 또는 제 2 호 마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자는 이 규칙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